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대응방향

최고의 전문역량으로 숭고한 생명을 지키고
고객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대응방향

I. 정부 안전 정책 수립 경과

II. 2025 안전종합대책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1-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 1-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 1-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 2-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 2-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 2-3.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 2-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3-1.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및 안전의식·문화 확산

4. 안전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 4-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 4-2. 사고 조사·수사 강화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1.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가치

2. 사업 소개

I. 정부 안전 정책 수립 경과



1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2025. 6. 16.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5개년 계획 수립하기 위해 7개 분과에서 활동

2

의견 수렴 및 국정과제 반영 : 2025. 6. 18.부터 약 60일간

국민의 의견, 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분과별 회의 등 실시

3

국민보고대회 개최 : 2025. 8. 1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여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으며,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전략1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에서 국정과제 75번째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주로 안전 정책이 반영

전체 체계도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9개 과제	79개 과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3대 강국 도약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29개 과제	137개 과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23개 과제	113개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37개 과제	173개 과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5개 과제	62개 과제

I. 정부 안전 정책 수립 경과



4

세부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발표 : 2025. 8. 22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여 '공정한 성장'전략 중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파트에서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 강화'를 위해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5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 2025. 9. 15.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예방보상	안전 사각지대 예방지원 강화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 도급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개선 •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권리 보장
구조 개선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 안전의식·문화 확산
제재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 여신심사, 자본시장평가 등에 반영 • 사고조사수사 강화

※ 출처: 노동안전종합대책 요약본(2025.9.15.)



1. 안전 사각지대 예방지원 강화

1-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정책 개요



- **재정**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예방 지원 대폭 확대*,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
* 기존 소요 비용의 50~80%→최대 90%까지 지원, 2026년(안) 433억<신규>
-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지원(2026년 370억), AI 기술 활용 위한 R&D 체계 구축
-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現 50인 이상) 확대+인건비 등 지원 신설, 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지원
- **기술** 중상해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 선제적 컨설팅 신설(2026년 8,000개소), 실제 개선을 위한 이행점검 확대·재정지원 연계
- **교육** 외국인·사업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VR 자료 등 체험형 교육 확대

기업 대응방향



1. 재정 지원 사전 준비

-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고위험 공정별로 현장 작업자 참여하에 위험 요소 자체진단 후, 개선 설비 목록을 사진 및 도면과 함께 사양·수량·설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안전시설 투자*계획 수립
*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일체식 작업발판, 지붕안전대 부착설비, 노후 방호장치, 신체감지센서 충돌예방장치 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진단을 통해 3대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안전보건공단 문의)

2.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대비

- 자체 선임, 외부 위탁,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방안별 비용 효과를 분석하여 안전 인력 운영 계획 재검토
- 기업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참여, 인건비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용 부담 완화

3.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선제적 진단 및 역량 강화

- 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이력 점검 후, 정부에서 실시 예정인 기술지원(컨설팅) 신청
- 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안전설비 투자,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책금융 금리 등 우대 혜택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관한 적극적 투자 고려



1-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정책 개요



외국인 노동자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직무훈련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 강화·외국인 안전리더 확산(2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 교통사고 예방 지원(무상정비 등) 유상운송보험가입 및 교육 강화

고령노동자

-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 직종별 안전보건가이드 개발 및 안전교육 확대

기업 대응방향



1. 외국인 노동자 맞춤 안전관리

- 장기근속 외국인을 사내 안전 리더로 지정하여 외국어 안전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 참여,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외국인 노동자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 외국인 대상의 안전교육 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명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을 시행

2.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안전관리 계약화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의 위탁계약서에 안전보건 준수 조항을 명시하고, 각 직종별 특성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제4절(그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직종 확대 및 사업주 의무 확대에 대응하여 자체 규정 정비
-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신설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련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필요

3. 고령노동자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고령 비중 업종은 체크리스트법, 3단계 위험 수준법 등 현장 노동자가 이해하기 쉬운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전환 권장
- 고령 친화 설비를 공정별로 목록화하고,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포함한 설비 개선 투자계획 수립
- 고령자 대상 작업 중 2인 1조 필요 작업을 지정하고, 중량물 운반·고정 자세 반복 업무는 주기적 교대 또는 휴식 주기 기준을 명문화하여 관리할 것을 권장



1-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정책 개요



- **중앙**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감독 물량 확대(2028년까지 7만개소),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및 합동 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으로 개선
- **지방**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점검·감독(2028년까지 3만개소), 지방 벌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 전개도록 지원 신설(2026년(안) 143억)
- **민간** 경험·역량을 갖춘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1천명) → 1억 미만 건설 현장 등에 집중 투입

▶ 지역별 노동부-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61만개소 사업장 점검·관리

기업 대응방향



1. 중앙정부 감독 강화 대응

- 현장별 필수 안전관리 서류(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등)를 자체점검·보완하여 불시 패트롤에 대응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활동(매월 현장점검의 날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
- 합동점검 시 불법파견, 근로시간 등 노무 이슈도 점검할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사항 체크 필요
-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즉시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이상 유무 등을 주기적 확인하여 내외부 출입자에 의한 신고 예방 필요

2. 지자체 점검(30인 미만) 대응

- 산재다발 위험요인(지붕공사, 벌목작업 등)을 보유 시 지도·점검 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상시 점검 및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지역별 특화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 안전조치, 비상대응 절차를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계절·기상조건(폭설, 태풍, 폭염)에 따른 가동 중지·연기·대체 작업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권장

3. 민간을 활용한 상시 순찰, 지도 관리 강화 대응

-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지킴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집중 지도·관리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지역별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 기술지원, 안전자료 등의 전문적인 업무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2-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정책 개요



- **적정 비용**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심사(국가 공사 100억 원 미만) 낙찰하한율 상향(+2%p)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발주자 → 원청),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現 공사비의 2~3%) 단계적 인상 검토
- **공사 기간**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 포함(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기업 대응방향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체계 재정비

- 발주자의 경우 공사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필요(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검토 체계 도입 등)
-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에 대비해 산업안전비용 전용 계정을 구축하고, '편성-집행-사후확인' 프로세스를 내부 지침화하여 월별 집행내역을 작성·관리할 것을 권장
- 제조업에서도 조선업 등으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므로, 계상 주체·비율·기타 계상기준에 대한 검토 등 기업 특성에 맞게 계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2. 투명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체계 재정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별(안전시설·장비·교육·인력)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며, 노사 공동 점검 월례회의 등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권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2.12.)

3. 부당특약 방지 및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 비용 삭감·전가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등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선제되어야 함
- 하도급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용 전가 부당특약이 없는지 확인
- 발주자는 모든 계약 시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원하청 등은 입찰 전 설계서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인 공사 기간 산정 요구
- 설계 단계에서 작업량·공법·안전조치·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기간 심의·검토 의무화에 대비해 인허가기관 제출용 공기 산정 표준 자료를 체계화



2-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정책 개요



- **책임성 강화**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요청 근거 마련, 고위험 현장 인력 우선 재배치,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
- **안전 관리 평가** 경영평가 산재예방 분야 배점(現 0.5점) 대폭 상향,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재난관리평가, ESG) 등에 반영
 - 지방공기업 안전 관리 수준 평가 도입·확대(現 17개소 시범 운영)

기업 대응방향



1. 기관장 중심의 책임체계 확립

- 기관장은 안전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회의체 운영 시 안전보건관련 이슈를 중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안전 인력 재배치·증원 필요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필요
- 조직 내 안전보건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
- 현장 작업의 운영 실태 조사, 수급업체별 안전 투자 우선순위와 현장 애로사항을 정례적 회의 등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노후시설·장비교체, 안전투자 계획 작성 시 반영하는 등 자체적인 자정 작업 또는 컨설팅 기관 활용

2. 도급사업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이행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발주자, 수급업체 등 모든 계층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3. 안전활동 수준평가 전면 공표 대비

- 경영평가 내 '산재 예방 분야' 배점 상향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 신설에 따른 적극 노력 및 참여 필요
-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확대 및 건설현장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해당되는 기관은 배점이 상향된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표를 대비한 안전확보 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KOSHA GUIDE)' 등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 모니터링
-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 순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별 개선사항, 투자 우선순위, 안전 인력 재배치 계획 등으로 정리하여 경영회의에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



2-3.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정책 개요



- **불법하도급**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
 - **하도급구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계약 의무·절차 명확화*, 6개 분야 공공기관(발전, 에너지 등) 하도급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 등

기업 대응방향



1. 하도급 계약 적법성 점검 체계 구축

-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현황, 계약별 필수 증빙 문서 등을 구분 관리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무등록 업체, 명목대여 등 불법 소지 사전 점검 및 계약 제한
- 자체 감사 또는 제3자 감사를 통한 하도급 구조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불법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협력업체 등록 제한 등 사전 제재 수단 운영

2. 수급업체 안전관리 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강화

- 정부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내부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평가 항목을 의무 반영
-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 계약 체결 시, 담당 부서 경고 또는 책임자 제재 권장
- 고위험공정(밀폐공간 등)별로 필수장비·인력·교육 요건을 목록화하여 입찰·계약·현장점검단계에서 적용 및 관리

3.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책임 확대 대응

- 발주자, 설계자·감리자 등의 건설현장 주체별 안전관리 책무 등이 포함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현재 국회 의원 법안 발의하여 소관위 심사 중)에 대응한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계 변경 시 안전 검토 절차와 감리자 안전점검 역할을 강화
- 발주-설계-시공-감리 간 안전관리 정보 공유, 안전조치 이행점검을 위한 통합 회의체 운영 권장

주체별 주요 책임 내용

대상자	책임 내용
발주자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 등
설계자	설계도서 작성 시,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 등
시공자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
감리자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
건설사업자	소속 노동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



2-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 개요



알 권리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 마련 (예시: 반기)

참여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 수립·이행
- 노동자 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피할 권리

-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신설
-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기업 대응방향



[알 권리]

1. 재해조사보고서

- 재해조사보고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 등 타 법률 충돌 및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우리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관점에서 정기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2. 안전보건공시제

- 500인 이상 사업장(26년 하반기)에서 300인 이상(27년 상반기)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에 따라 공시 항목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공시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을 권장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재가 기존보다 강화되므로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즉시조치(보호구 지급 등)-단기조치(작업절차 개선 등)-중장기조치(설비 개선)로 분류하여 월별로 이행률을 관리할 것을 권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절차를 준수하고 반드시 작업·공정 노동자 참여, 결과 공유,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노동자 참여 없이 안전관리자, 해당 공정 관리감독자만의 위험성평가는 미실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외부 기관에 컨설팅 의뢰 시에도 필수 절차 준수 의무를 사업장에서 협조해야 함)
- 자체 위험성평가가 어려운 사업장은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 컨설팅 기관을 활용



2-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참여 권리]

1.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대응

- 공공기관과 제조업 중 50인 이상 조선, 철강, 자동차 업종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대상이므로 구성원, 개최주기, 의결절차 등을 명시한 운영 규정을 제정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약체 적용범위 확대(12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에 따른 대상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실효성 있는 협약체 운영 기준 마련 시행(정기회의, 합동점검, 안전 이슈 공유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등)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대응

-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위촉해야 한다’)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촉·해촉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행령 제32조(위촉 등) 및 33조(해촉), 고용노동부 예규 제164호(2020.1.16.)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자와의 의견차이 발생 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 관리 권장

기업 대응방향



[피할 권리]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 마련

- 정부에서 마련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개정
- 현장 내에서 다양한 신고 채널(모바일 신고앱, 현장 핫라인 등)을 구축하여 노동자가 부담없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정조치 완료 후 별도 주기를 정해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동일 위험요인 재발 시 추가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류 체계를 구축

2. 관리자 교육 및 현장 문화 개선

-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을 사내 규정에 명문화 하거나 관리자 징계조항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 권장
- 작업중지권이 방해요소가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권리로 인식되도록 현장 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3-1.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및 안전의식·문화 확산

정책 개요



-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 정보를 관리하여 경력별(초급, 중급, 상급) 직무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경력 관리 유도
- **민간 재해예방기관** 신규·저역량 기관에 컨설팅(기관 운영 방향 등) 지원, 부실기관은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 퇴출 유도
- **직접 위험 신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 생활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8.29.~)
 - ①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②산재은폐·정부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2026년(안) 111억)

포상금 지급(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방호설비 미준수 등): 1건 당 50만 원
▲고의적인 법 위반(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 1건 당 500만 원

- **안전 인식 확산** 생명안전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 정부,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의체·추진단 운영*을 통해 경영진 인식 제고,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
- * 정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기업 안전문화 확산 추진단」 운영 등
- 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기업 대응방향



- 1.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용**
 - 안전·보건관리자가 본인의 경력에 맞는 직무교육 및 전문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현장 적용 역량 강화 유도
 - 전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컨설팅 기관을 선정

* 참조: 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2. 안전일터 신고센터 대응체계 구축**
 -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2026년부터)에 대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현장 내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이상유무 등)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내·외부 출입자에 의한 신고 예방
 - 직접 위험 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법 위반이나 산재 은폐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접수 시에 사실확인 및 즉각적 시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3. 안전인식 문화확산 활동 참여**
 -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문화확산 추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련 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활동 수행



4. 안전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4-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정책 개요



- **과징금 도입**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도입(산업안전보건법)
- **영업정지 확대**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하여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요청 대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까지 포함(소관법, 산안법 시행규칙), 영업정지 기간(現 2~5개월) 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인허가 취소 등**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전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다른 법률의 인허가 취소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포함(11개 부처 33개 법률 대상 검토, 법제처)
- **공공입찰**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낙찰자 선정 시 평가(감점 확대 등) 강화, 제재효력 승계 규정 마련
- **금융** 대출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대출약정 등 개선
- **투자**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이 투자에 고려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의무화, ESG 평가, 스톱어드십코드에 반영

기업 대응방향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전 설비 투자,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외부 컨설팅 등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어 관리

2. 공공계약·시장접근에서의 안전경영 차별화 전략

- ISO 45001인증 선제적 취득 등을 통해 제한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
- 우수기업 인센티브(정책금융 금리 우대, 근로감독면제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추가 안전투자 재원으로 선순환 관리



4-2. 사고 조사·수사 강화

정책 개요



- **의무 준수 촉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및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
- 사망사고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적발 시(일반감독) 즉시 집행(10.1~)
- **신속·엄정 수사**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등 관계 부처 협업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기소

기업 대응방향



1. 긴급작업중지 명령 대비

- 작업중지 명령 수령 시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중지 상태를 기록하며, 작업중지 해제절차를 포함한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을 권장

2. 사전 점검 → 명령 즉시 이행 →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프로세스 준수

- 시정조치 명령이 위반 적발 즉시 집행되므로(2025년 10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설비·공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목록화 필요
- 하도급 안전관련 자료(하도급 계약서, 합동 안전점검 결과, 위험정보 제공 증빙 등) 기록을 수시로 업데이트 및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자율진단컨설팅 등 도입 및 운영

II. 2025 안전종합대책



[참고] 입법과제 목록 [8개 부처 12개 법률]

	대책 주요 내용	관련부처	개정 법률
1 지원 예방	▶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 건강진단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2 노사의 역할 · 책무 강화	▶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원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 전문·인허가기관 장의 심의·검토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책임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대표 참여,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사고 다수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3 실효적 제재	▶ 영업정지 대상 확대 및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재부, 행안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4 안전 의식	▶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출처: 노동안전종합대책 요약본(2025.9.15.)

1964년부터 시작된 안전을 위한 길

사람을 향해 미래를 향해 안전을 진화시킵니다

협회가 걸어온 안전의 역사를 회상하며
어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1.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가치



설립
1964년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전전문기관(비영리 사단법인)



시장 점유율
1위

고용노동부 지정 전국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
시장 점유율 1위



매출액
약 **1,660**억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교육생
약 **110**만 명

매년 4만 개 사업장 대상
안전교육 실시



협업체계
약 **400**개

정부, 안전 분야 학술 및
민간단체 등 안전
소사이어티와의 협업체계 구축



고객사
약 **40,000**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컨설팅 등 수행



특허·저작권
37개

안전 분야
전문 특허 및 저작권 보유



임직원
약 **1,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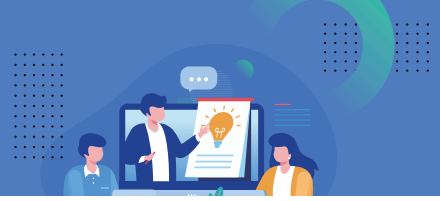
기술사, 지도사, 기사를
비롯한 국가 기술자격과
석·박사 등 학위 보유



회원사
약 **3,500**개

전국 산업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등 회원 관리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드는 공공의 가치 KISA의 맞춤형 통합 솔루션

KISA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솔루션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경영 체제 구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
- 안전문화 컨설팅
- 경영책임자 등 안전리더십 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 고위험 맞춤형 안전지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설안전 컨설팅
- 화학물질 안전 및 환경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
 - 근로자 안전교육, 직무·전문화, 맞춤형, 원격, 비대면 교육 등
-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안전진단
-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 점검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KISA 제품인증(산업용로봇)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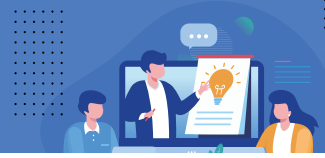
중대시민재해 예방

- 시설안전진단
 - 건축물, 공공시설 등
- 레저·수련·체육시설 안전점검
- 교육시설 안전인증
-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 학교 위험성평가 컨설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지도 점검)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안전보건 성과관리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반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응
- 재난관리평가 대응





2. 사업 소개

기업의 미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최고의 안전경영 파트너 KISA

대한산업안전협회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글로벌 질서 속에서 기업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2. 사업 소개(제조업)

제조업에 특화된 KISA의 맞춤형 안전 서비스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강화합니다

제조사업장에서 안전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KISA는 제조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과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생산적인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위탁·기술지도

국내 최초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현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기술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제조현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자율안전확인신고

KISA는 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에 대하여 자체 전기안전시험을 포함한 체계적인 점검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전기안전성 시험 실시 및 성적서 발급

위험성평가 컨설팅

KISA의 컨설턴트들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히 찾아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 단위 기업 대상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해당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사전준비부터 보고서 작성, 심사 완료까지 전 과정 컨설팅 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

KISA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설계부터 제조, 설치, 관리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합니다.
안전인증·검사 모두 S등급 획득(국내 유일)

2024년 기준

KISA 점유율 : 안전인증 47.9% | 안전검사 37.5%

KISA 제품인증

KISA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계부터 설치까지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고 적합성 제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품인증대상 : 산업용 로봇 시스템(협동로봇 등), 고소작업대

· 고객 니즈를 반영한 KISA의 전문화된 서비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컨설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PSM
컨설팅

MSDS
제출 및
승인 컨설팅

화학사고예방
/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통합
환경허가
컨설팅

산업안전
진단

자율안전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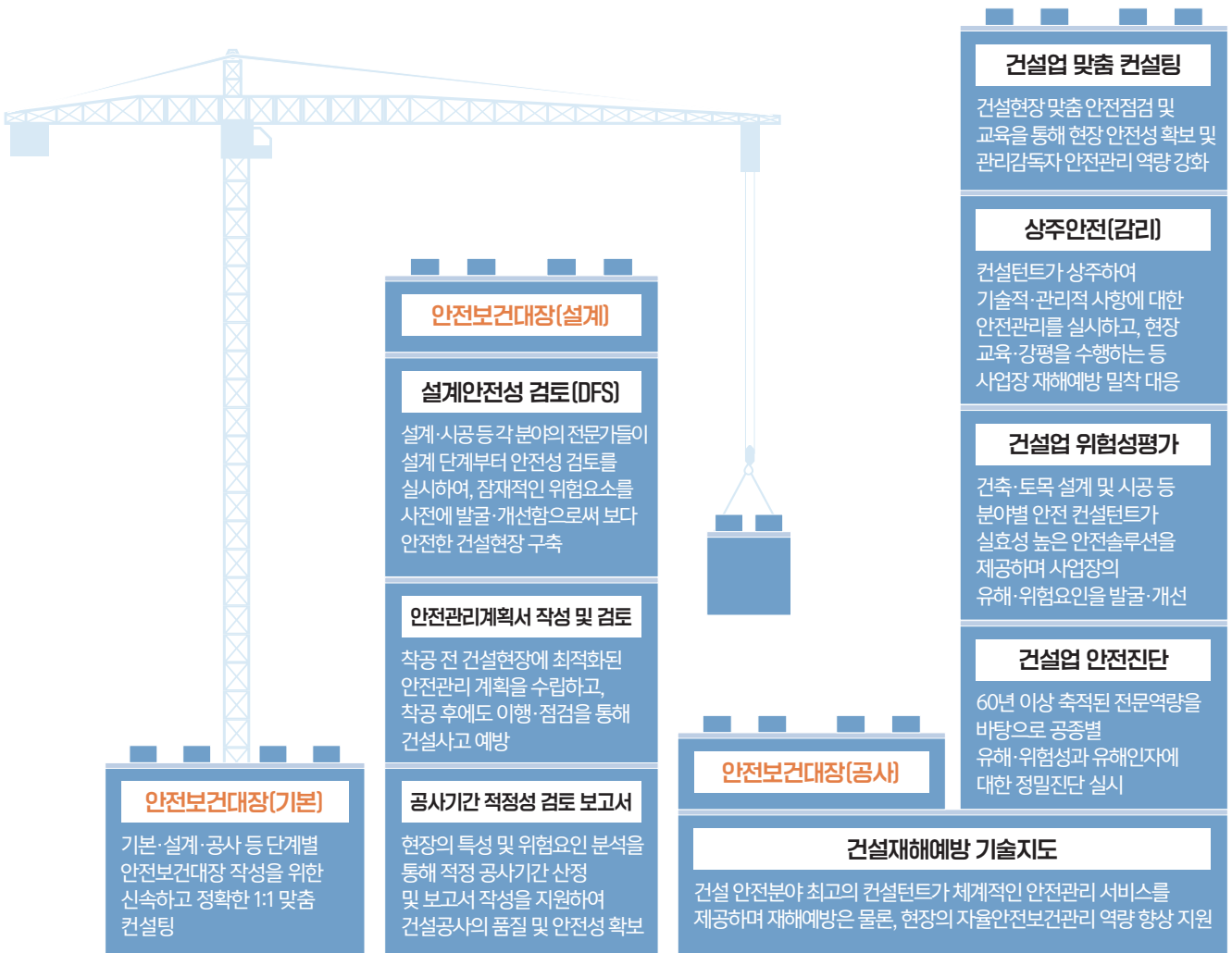
안전문화
컨설팅



2. 사업 소개(건설업)

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All-In-One 서비스

건설업은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통합적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
KISA는 공사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현장 전 과정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1. 중대재해 예방·대응 통합 지원단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부응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 전국단위 건설현장, 다업종 사업체를 중심으로 통합적 안전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진단 ▲교육 ▲인증·검사 ▲위험성평가 ▲건설 ▲화학컨설팅 ▲산업위생 ▲시설 ▲안전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단위 프로젝트팀 운영)

01 step

정밀진단 실시

고객 니즈 분석 및 중대재해 취약 분야 발굴

- KISA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진단하고, 경영환경, 컴플라이언스 준수, 작업안전 등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진단

02 step

솔루션 설계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구성

- 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실무자와 인터뷰 및 도출된 리스크 요인 기반으로 취적의 컨설팅 패키지 설계
- 안전관리, 교육, 진단, 화학, 시설, 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 TF팀 구성

03 step

현장중심의 실질적 개선

컨설팅 수행 및 보고서 제출

- TF팀이 현장에서 컨설팅을 수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과 성과를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공
- 제3자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 및 교차분석

04 step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속개선 위한 핵심 컨설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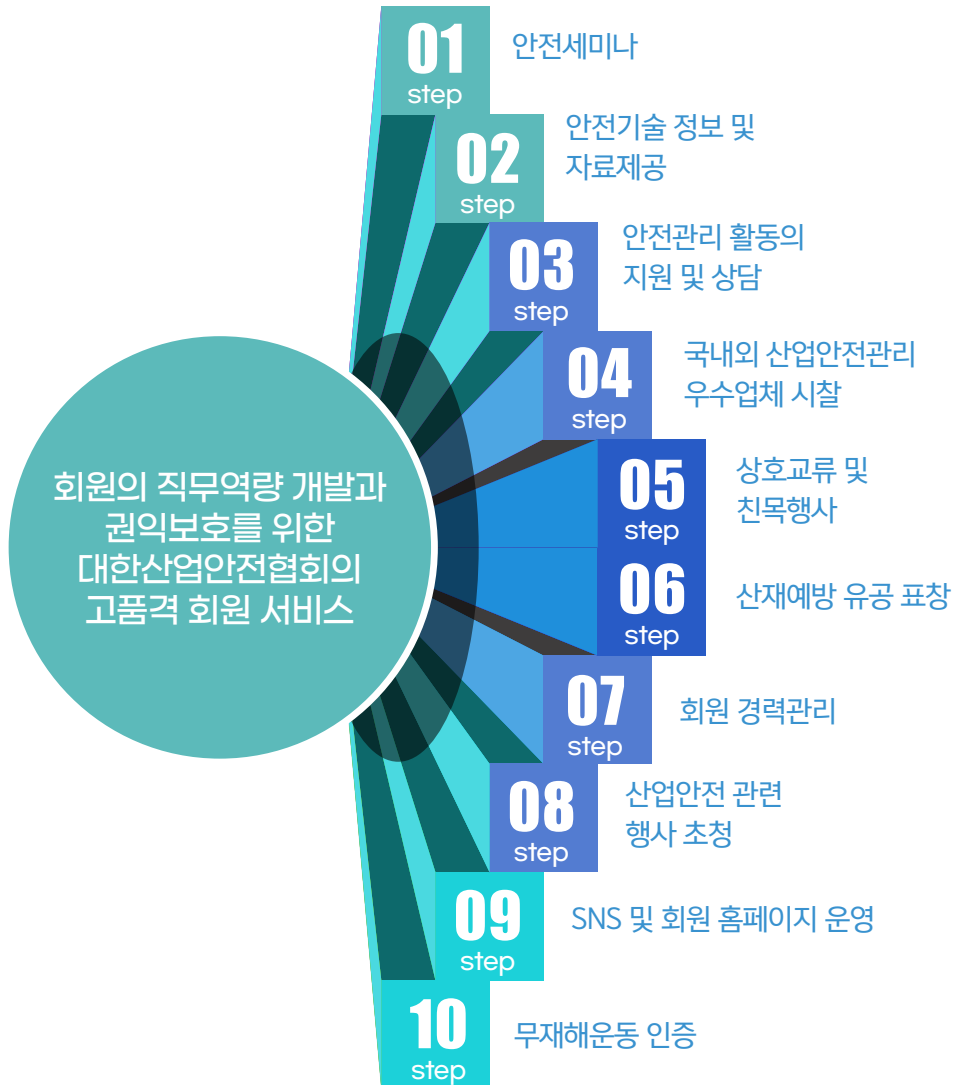
- 보고서를 토대로 안전관리 위탁, 안전교육, 진단컨설팅, 인증검사, 건설 및 시설 안전 등 현장의 니즈에 적합한 핵심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지속적인 개선사업제공 및 발전 된 안전경영 수준 달성 지원 →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 효과 측정

Ⅲ.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2.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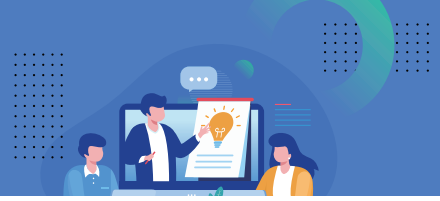
전국 약 3,500여 명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 회원이 활동 중으로 회원 상호 간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및 최신 기술정보 제공합니다.



회원서비스부 02-860-7172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13>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3. 안전관리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 그리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협회 전문가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고객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안전관리기술지도, 스마플

안전지원부 02-860-7149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22>

4. 안전보건교육

60여 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까지 최상의 안전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직무교육, 전문화교육, 특성화교육, 맞춤형교육, 원격교육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시휴먼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공



안전교육센터 및 지역본부(서울, 대전, 대구, 부산)

https://www.edukisa.or.kr/service/emapply/page/sbjct_apply_main_ofi.do?mid=326

Ⅲ.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5. 안전인증·검사

1998년 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안전검사·안전인증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유해위험기계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등 KOLAS 공인제품 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47.9%,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37.5%를 담당하였으며, 2024년 기관평가에서 안전인증·안전검사 두 분야 모두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 타워크레인 검사, 안전밸브 분출압력 시험

검사지원부 02-851-6452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57>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KISA 제품 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인증부 02-851-6458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5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생활안전부 02-860-7110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59>

Ⅲ.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6. 산업안전진단

1983년 노동부로부터 종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법적 의무사항인 산업안전진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문화 컨설팅, BBS 컨설팅은 물론, 도급승인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이행실태 점검 등까지 지원하며, 변화하는 법·제도에 맞춰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총 14,500개에 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안전진단기관평가 A등급을 획득)



산업안전진단,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자율안전점검, 연구실 안전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력·화재진단, 기계설비 성능 점검

안전진단부 02-860-7064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71>



안전문화컨설팅, 행동기반안전(BBS)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인증 컨설팅

안전문화컨설팅부 070-4276-2075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3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자율안전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안전지수 평가제, 관계수급인 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컨설팅부 070-4276-1710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33>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기타 컨설팅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안전기술부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31>

Ⅲ.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7. PSM 컨설팅

화학물질을 다루는 위험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화학사고(중대산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현장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가장 효과적인 화학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SM(공정안전관리)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통합환경관리제도(통합환경관리법) 컨설팅,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컨설팅, 폭발 위험장소 구분 컨설팅

화학컨설팅부 070-4276-0951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318>



8. 건설안전관리

1994년 건설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면서 양질의 안전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건설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설안전 컨설팅을 비롯하여, 설계안전성 검토 등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업 위험성평가

건설안전지원부 02-860-4721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43>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이행실태 점검), 건설업 안전진단

건설안전진단부 070-4234-8573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45>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설계안전성검토(DFS),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설계안전부 02-860-4731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44>



건설업 맞춤 컨설팅,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상주안전(감리)

플랜트안전부 02-860-4721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39>

9. 시설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1·2·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사업, 건축물관리법 관련 사업, 레저·수련·체육시설 안전점검, 기타 사업(구조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등)



시설지원부 02-860-4700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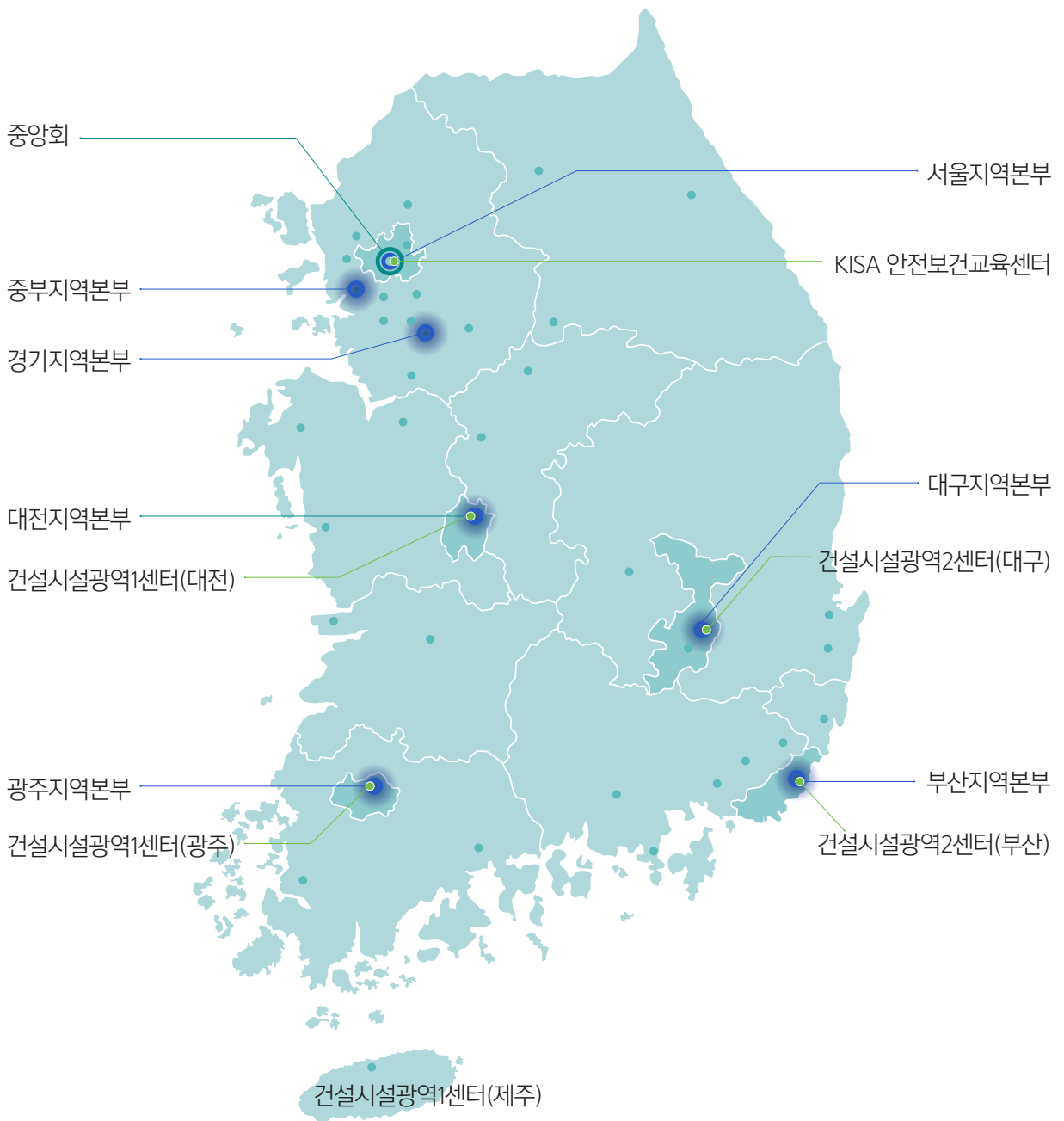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전국 KISA 안전 네트워크

안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1,300명의 컨설턴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중앙회
- 지역본부
- 지회·안전기술부
- 센터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SAFETY WITH KISA SPECIALIZED CONSULTING SERVICES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중앙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빌딩	02)860-7000	0507-351-7002	08289
인증검사본부	서울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 405호	02)860-7180	0507-351-7007	08295
진단컨설팅본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 성락빌딩 701~4호	02)860-7084	0507-351-7050	07401
안전교육본부 (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3층	02)6275-8698	0507-351-7008	08502
건설안전본부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2층	02)860-4734	0507-351-7011	08290
시설안전본부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3층	02)860-4700	0507-351-7010	08290
건설시설광역안전 1센터 [대전]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304호	042)936-2160	0507-351-7055	34025
건설시설광역안전 1센터 [광주]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504호	062)941-0156	0507-351-7055	62364
건설시설광역안전 2센터 [대구]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0, 동원빌딩 4층	053)710-3108	0507-351-7056	42032
건설시설광역안전 2센터 [부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 현대타워 202호	051)804-2069	0507-351-7057	47297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II 202호	02)869-7873	0507-351-7012	08511
서울동부지회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54 성수그린빌 301호, 302호	02)456-6644	0507-351-7013	04768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 현대타워 8층	051)804-5454	0507-351-7021	47297
울산지회	울산 북구 명촌2길 4-9	052)267-1500	0507-351-7022	44259
창원지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마동로 54, SM빌딩 6층	055)281-3936	0507-351-7023	51503
경남동부지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43, 지오프라자 4층	055)387-1343	0507-351-7024	50653
경남서부지회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77번길 29, 2층	055)752-4030	0507-351-7026	52851

III.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SAFETY WITH KISA SPECIALIZED CONSULTING SERVICES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통영안전기술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117, 2층	055)649-4031	0507-351-7027	53021
대구지역본부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0, 동원빌딩 4층	053)710-3100	0507-351-7028	42032
대구서부지회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메카센터 508호	053)359-2131	0507-351-7029	42714
경북북부지회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95, 매일신문사 3층	054)451-1221	0507-351-7030	39280
안동안전기술부	경북 안동시 산업단지4길 13, KISA 빌딩 3층	054)854-1020	0507-351-7031	36618
포항지회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 엠피빌딩 5~6층	054)277-0163	0507-351-7032	37763
경주안전기술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영지안길 4-35	054)775-0096	0507-351-7032	38203
충북지역본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817호	032)363-3300	0507-351-7033	21315
성남지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909호	031)777-9170	0507-351-7014	13229
이천안전기술부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144, 2층	031)637-9125	0507-351-7015	17391
경기북부지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 제일퍼스트빌 4층 406호	031)876-0281	0507-351-7016	11673
고양안전기술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91, 에이스스타디움 205호	031)932-0281	0507-351-7017	10340
강원지회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산업경제진흥원 305호	033)734-6201	0507-351-7018	26336
춘천안전기술부	강원 춘천시 칠전서길 38-10, 2층	033)255-6178	0507-351-7019	24457
강릉안전기술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317, 한국빌딩 502호	033)644-4601	0507-351-7020	25492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2층	031)241-2206	0507-351-7034	16467
안산지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5-13, 대우타운 401호	031)402-3998	0507-351-7035	15462
경기서부지회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4동 903호	031)382-9988	0507-351-7036	15850

Ⅲ. 대한산업안전협회 소개



SAFETY WITH KISA SPECIALIZED CONSULTING SERVICES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부천안전기술부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7번길 10, 삼정프라자 2층	032)611-1018	0507-351-7037	14723
경기남부지회	경기 평택시 송탄로 66, 이충프라자 4층	031)665-2416	0507-351-7038	17785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0, 2층	062)943-0156	0507-351-7039	62364
전북지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별관 1층	063)212-4022	0507-351-7040	54843
군산안전기술부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별관 2층	063)471-4074	0507-351-7040	54001
전남지회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4, KT동순천지점 3층	061)722-2801	0507-351-7041	57975
목포안전기술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과학기술진흥센터 본관 404호	061)464-2200	0507-351-7042	58457
제주지회	제주 제주시 신대로 64, 제주건설회관 2층	064)753-8237	0507-351-7043	63125
충북지회	청주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 334-19	043)236-0395	0507-351-7045	28180
충북북부지회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나동 2층	043)855-5171	0507-351-7046	27352
충남북부지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 파크프라자 7층	041)522-4011	0507-351-7047	31106
충남서부지회	충남 서산시 잠곡로 19	041)669-1480	0507-351-7048	31966
보령안전기술부	충남 보령시 대해로 128, 2층	041)936-5550	0507-351-7049	33492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대응방향

발 행 일 2025년 10월 24일
발 행 처 대한산업안전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구로동)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표번호 02-860-7000 교육문의 : 1544-3743

*이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게 있으며, 허가 없이 복제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